

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- 가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 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를 제41조로,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52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 -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를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, 제112조를 제121조로, 제137조를 제146조로,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함(안 제5조)
 - 법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변경함(안 제6조, 안 제12조)
 -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4항을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 제4항으로 변경함(안 제10조)
 - 법 제37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변경함(안 제13조)

- 제15조를 제16조로, 제16조를 제17조로 변경함(안 제20조)
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, 제36조를 제41조로,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를 제43조로 변경함(안 별표1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 타 의 견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6조”를 “제41조”로, “제19조의2”를 “제52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04조 내지 제105조”를 “제113조 내지 제115조”로 하고, 제3호중 “제112조”를 “제121조”로 하고, 제4호중 “제137조”를 “제146조”로 하며 제5호중 “제95조제2항”을 “제10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36조제3항”을 “제4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36조제5항”을 “제41조제5항”으로, “제17조의4제4항”을 “제4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36조제3항”을 “제4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제37조제2항”을 “제4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15조”를 “제16조”로, “제16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한다.

[별표]1 가.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중 “제36조제5항”을 “제41조제5항”으로 하고 나. 피감사(조사) 공무원 선서서 중 “제36조”를 “제41조”로, “제17조의4”를 “제43조”로 하며 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중 “제36조”를 “제41조”로, “제17조의4”를 “제4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 서</p> <p>본인은 충청북도의회 ○○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(○○○○위 원회)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 법」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주 소 : _____</p> <p>주민등록번호 : _____</p> <p>증 인 : _____ (인)</p> </div>	<p>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 서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제41조 제43조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주 소 : _____</p> <p>주민등록번호 : _____</p> <p>증 인 : _____ (인)</p> </div>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1조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②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4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④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⑤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 ⑥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52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